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재정

- (한국)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정부 간 비용부담 비율 개선방안

지역발전

-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교통 배리어 프리정책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주택 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정부 간 비용부담 비율 개선방안

현행 보조사업 비용부담 비율의 개선 필요성

-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의 설정을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는 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앙-광역-기초 간 배분에 있어서 기준부담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비율 개선방안

-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기준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121개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에서는 111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준부담률을 제시하고 있음
 - 중앙-지방간 기준보조율과 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이 일치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하여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있어서 명확한 재원분담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121개의 중앙-지방간 기준보조율 사업 중 국비 100% 사업을 제외하고 68개 사업에 대한 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간,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국가, 광역, 기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부담금 사업'의 경우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국가 50%, 광역 25%, 기초25%의 비용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또한 121개 사업 중 30.8%만 기준보조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둘째, 국고보조사업 일몰제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121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12개로 나타났음
 - 해당 규정이 2018년 12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수행되지 않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본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기준을 개별 법령에서 국가-광역-기초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고보조사업은 운영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 포괄보조금 형태로 국가-광역-기초 간 재원분담률을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사무에 대해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본 사례처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개별적인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계획계약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을 계약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별 사무에 대한 기준부담률과 동일 사업군 또는 사업 유형에 대한 기준부담률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2-track)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개별 사무의 수준에서는 광역-기초 간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기준부담률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다수의 개별적인 사무를 포함하는 동일 사업군 또는 사업 유형의 수준에서는 법률에 중앙-광역-기초 간 기준부담률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식임
 - 예를 들어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부담률(예를 들면 50%)을 법률에서 설정하고, 노인복지 관련 세부사업들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광역-기초 간 협의 또는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임
 - 개별적인 노인복지 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노인복지 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기존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음
 - 그러나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지방세 구조에서는 자체재원 증가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보다 크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시·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반드시 소속 기초자치단체와의 예산정책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가칭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업은 광역이 전적으로 재정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부록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	지방체육시설 지원	50	50	50	50
6	생활체육교실 운영	50	50	50	50
7	지역항토축제지원	50	50	50	50
8	작은도서관 도서관구입 지원	50	50	50	50
9	문화상품전개회 지원	50	50	50	50
10	항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50	50
11	공동도서관 건립운영 지원	50	50	50	50
12	공립박물관 건립	100	0	100	0
13	지방문예회관 건립	50	50	50	50
14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	50	50	50	50
15	전통사찰 정비	50	50	50	50
16	유명예술인 기념 사업	50	50	50	50
17	상설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100	0	100	0
18	전통예술 상설 공연	50	50	50	50
19	발기반 정비	50	50	50	50
20	한밭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21	농공단지 조성 지원	50	50	50	50
22	기계화경작로 확장 및 포장	50	50	50	50
23	토양개량 사업	50	50	50	50
24	대구회경지 재정리	50	50	50	50
25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설	50	50	50	50
26	지역특화 사업	50	50	50	50
27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28	축산물 검사	50	50	50	50
29	환경농업지구 조성	50	50	50	50
30	석탄비축	50	50	50	50
3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32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50	50	50	50
33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50	50	50	50
34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0	0	50	50
35	고도정수처리 시설	50	50	50	50
36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50	50	30	70
37	폐금속광산 오염방지 시설	50	50	50	50
3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50	50	50	50
39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50	50	50	50
40	하수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41	자연환경보전 시설 지원	50	50	50	50
42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50	0	0
43	모자보건 관리	50	50	50	50
44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45	한센장애인 보호	100	0	100	0
46	급성전염병 관리	100	0	100	0
47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00	0	100	0
48	의료보호	100	0	70 80	시30 군20
49	부랑인보호	100	0	100	0
50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	100	0	100	0
5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100	0
52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53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54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학비 지원	100	0	50	50
55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56	공공의료기반 확충	100	0	50	50
57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00	0	50	50
58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59	경로연금	70	30	50	50
60	병원선 운영	100	0	50	50
61	부랑인보호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62	지방공사의료원 시설 지원	100	0	100	0
63	고용촉진 훈련	100	0	50	50
64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0	100	0
65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00	0	50	50
66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지원	100	0	0	0
67	도시철도 운영보조(원리금 상환)	100	0	0	0
68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100	0	0	0
6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100	0	50	50
7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100	0	50	50
71	영유아보육사업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72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73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4	서해5도 공동운반선 운영	50	50	50	50
75	인공어초시설	100	0	100	0
76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	100	0	100	0
77	시·도 지도선 건조	0	0	100	0
78	2중 어항 건설	100	0	100	0
79	어장 정화	0	0	30	70
80	시·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00	0	100	0
8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00	0	50	50
82	어장정화선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83	오염해역 준설	50	50	50	50
84	어촌종합개발	50	50	50	50
85	지방 수산과학관 건립	100	0	100	0
86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00	0	50	50
87	양식용 기자재 공급	50	50	50	50
88	종묘 매입·방류	50	50	50	50
89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90	어선정화조 건조	100	0	50	50
91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	30	70	30	70
92	농업기계화 훈련 지원	100	0	30	70
93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94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00	0	0	100
95	영림계획	100	0	50	50
96	산불방지 대책	30	70	30	70
97	조림	30	70	30	70
98	육림	30	70	30	70
99	사방	70	30	70	30
100	자연휴양림 조성	50	50	50	50
101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100	0	100	0
102	임도건설	30	70	50	50
103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104	수출임산물 생산 지원	50	50	50	50
105	산촌종합개발(마을조성)	50	50	50	50
106	협업체단지소득 조성	50	50	50	50
107	임산물저장 시설	50	50	50	50
108	미약중독자 재활 진료비	50	50	50	50
109	국가지점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110	만행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50	50	30	70
111	119 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00	0	100	0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부록 2.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37. 삭제 (2018. 12. 18.)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8. 경전철 건설	정액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39. 횡단보도도로 건설	정액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41.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100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10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나. 지방관리	50		44. 삭제 (2019. 12. 24.)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10. 도양개발사업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11. 가족분노처리시설 지원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가. 약제대금	100	
나. 개별시설	20		나. 기타	50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액비화(液肥化) 시설	40		48. 산불방지 시설·정비 확충 및 운영	4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시설)	5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12. 삭제 (2019. 12. 24.)			가. 장기수(長期樹)	60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나. 큰나무	50	
14. 농기계임대사업	50		50. 숲 가꾸기	50	
15. 농업소득보전교정직접지불	100		51. 사방사업	7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52.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50	
17. 농업임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70		55. 삭제 (2019. 12. 24.)		
20. 못가름 작물 종자대금	50		56. 임도시설	7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60. 원림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61. 지역농축지도사업 활성화	5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62. 지역전략적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26. 폐기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용지매입비 제외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27. 삭제 (2016.4.28.)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가. 도로(동계)	50(70)	
31. 하수처리장 확충			나. 경기장	30	
가. 광역시	1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나. 광역시(종인처리시설)	50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다. 시지역(읍 이상)	50		70. 삭제 (2019. 12. 24.)		
라. 군지역(면 이하)	70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72. 삭제 (2019. 12. 24.)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73.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75. 선진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35. 가족분노공공처리시설 설치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가. 광역시	60		77. 한센양로자 지원	서울: 30	
나. 광역시(군지역)	8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방: 50	
다. 시·군·구	8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7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급여	서울: 50 지방: 80	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 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감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서울: 50 지방: 80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정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서울: 50 지방: 70	101. 농어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서울: 50 지방: 70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2. 사회적기업 육성	서울: 50 지방: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서울: 50 지방: 7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서울: 50 지방: 70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서울: 50 지방: 70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5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10. 삭제 <2019. 12. 24.>	서울: 50 지방: 70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112. 하수관로 정비	서울: 50 지방: 70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서울: 50 지방: 70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 지역: 70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서울: 50 지방: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93. 화장시설·불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현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1. 현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흥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교통 배리어 프리' 정책

개요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의미함
- 일본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이용자에 대한 배리어 프리를 추진하고 있음

일본의 교통 분야 배리어 프리 정책의 변천

- 2000년, '고령자, 신체장애자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이하, 교통 배리어 프리법)'이 제정되어, 철도와 버스를 비롯한 공공교통기관과 더불어 철도역 등의 주변 도로와 역 앞 광장, 통로 등 이동 경로의 통합적인 배리어 프리화를 추진
- 2006년, 건축물의 배리어 프리에 대해 규정하는 '고령자, 신체장애자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하트 빌딩법, 1994년 제정)과 통합하여 공공교통기관 이외의 건물, 도로, 공원 등의 일체적인 배리어 프리화를 촉진하는 '고령자, 장애자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배리어 프리 신법)'을 개정
- 2013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가 결정되었고, 2017년 '유니버설 디자인 2020 행동계획'을 발표함
- '유니버설 디자인 2020 행동계획'의 골자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국민 의식과 개인행동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배리어 프리'를 학교, 기업, 지역 등에서 실시하고, 마을 만들기 측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는 것임
- 교통 관련 분야에서는 '배리어 프리법' 등 관계 시책의 재검토와 더불어, 경기장 주변, 공항 등의 중점적 배리어 프리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 배리어 프리화 공항버스 도입 촉진, 도쿄뿐 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높은 수준의 배리어 프리화 추진, 관광지의 배리어 프리 정보 제공, ICT 기술 활용,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역무원의 응대 수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기존 배리어 프리화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정

- 배리어 프리화의 현황과 주요 개정 내용은 표 1, 표 2와 같음
- 수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점,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배리어 프리의 부족한 점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
- 국제 패럴림픽위원회(IPC)가 정하는 Accessibility Guide와 일본의 배리어 프리 기준에 입각한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를 책정하여 공표

| 표 1 | 배리어 프리화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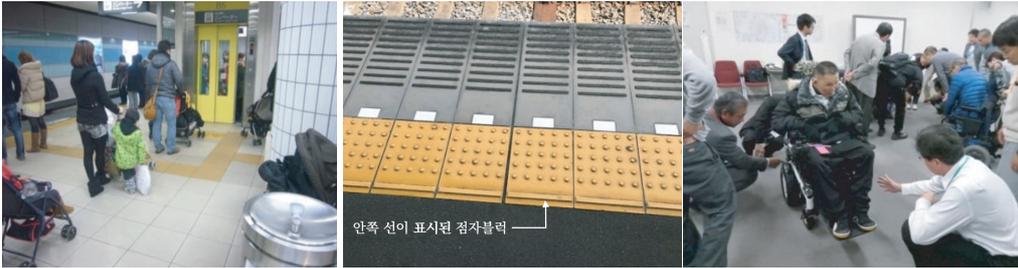
	2016년도 실적	2020년도 목표치
여객시설의 배리어 프리화 현황 (일일이용자수 3000명 이상)		
-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대상시설수 3655)	93.8%	100%
- 단차 제거 (대상시설수 3655)	87.2%	100%
- 장애인용 화장실 (화장실이 있는 3415 시설을 대상)	84.2%	100%
차량 등의 배리어 프리화 현황 (대상 차량 총 수에 대한 비율)		
- 철도 차량 (총 5만 2212)	67.7%	70%
- 계단 없는 버스 (총 4만 5467)	53.3%	70%
- 여객선 (총 663)	40.3%	50%
- 항공기 (총 612)	97.1%	90%
- 택시	15,128대	28,000대

자료 : SAWADA Daisuke(2019)

| 표 2 | 2018년 여객시설의 이동등 원활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

현황 / 과제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한 동선 이상을 배리어 프리화 할 것 • 한 동선만 배리어 프리화 되어 있어 일반적인 동선보다 장거리, 장시간 이동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 프리 동선의 최단 경로화 • 배리어 프리 동선의 복수화 • 환승 동선의 최단 경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엘리베이터 최저 규모는 11인승 이상일 것 • 휠체어 이용자 이외에도 유모차, 캐리어 등을 가진 이용자 등 이용자가 많아 장시간이 소요됨 (사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시설의 이용자 상황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대형화 및 복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1 개소 이상의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할 것 • 다목적 화장실이 혼잡하여 사용에 장시간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 프리 화장실의 복수화, 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의 철도역 선로 추락 사고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안쪽 선이 있는 점자 블록을 설치 (사진 2) • 블록은 JIS T 9251 규격으로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과 차량바닥면과의 단차, 간격으로 인해 휠체어 사용자가 승무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승차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 간격을 해제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기술 (구체적 수치기준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열차 1량에 1개소 이상 휠체어 공간을 설치할 것 • 열차 차량내 휠체어 공간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차 1량에 2개소 이상 휠체어 공간을 설치

자료 : SAWADA Daisuke(2019)



| 사진 1 |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행렬 | 사진 2 | 플랫폼의 점자블럭 | 사진 3 | 연수 프로그램의 모습

소프트 면에서의 배리어 프리화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배리어 프리법의 개정을 시행하였고, 그 이념으로서 ‘공생 사회의 실현’, ‘사회적 장벽 제거’를 제시
- 시설 정비라는 하드 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교통 종사자에 의한 승객 응대의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등 교육의 중요성도 명시하고 있음
- 일례로서, 버스 운전사나 역무원 등의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리어 프리 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음(사진 3)
- 장애인 강사는 실제 교통기관 이용의 문제점 등을 전달하고 연수자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함 (예, 공간이 한정적인 버스에 한 번에 많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는 경우의 대응책 등)
- 더불어, 정보 제공의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시각장애인등의 정보 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한 ICT 기술 응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시사점

-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배리어 프리를 촉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교통 배리어 프리’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상황을 살펴봄
- 엘리베이터, 다목적 화장실 등 시설 정비 측면에서의 하드 대책과 더불어 장애에 대한 국민 의식과 지식의 향상 측면에서의 소프트 대책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장애인 당사자가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사후에도 정기적인 평가 및 재검토를 거듭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발견 및 시설 계획과 시공 종사자, 교통 종사자의 이해 촉진을 도모함

참고문헌

- 澤田大輔, 「2020年に向けた交通針阿夫利の政策と整備の取組について」, 精密工学開始, Vol.85, No.1, 2019
- Tokyo 2020 Accessibility Guide (<https://tokyo2020.org>)
- バリアフリー新法および基本構想の概要について

김지윤 통신원

(도쿄대학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jiyoon-k@iis.u-tokyo.ac.jp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주택 후원

개요

- 잘츠부르크 도와 시는 시민들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주택난 방지, 투기 억제, 경기에 적합한 임대료 조성, 시대에 맞는 주택 보급을 지향함
-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개량할 때 에너지 절약 관련 시설이나 건축 재료를 설치, 사용할 경우 후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정책 과제도 동시에 수행하는 효과를 누림
- 누구나 일부 후원을 통해 자력으로 영위 가능한 주택을 보유하고 사회 취약층도 중산층 수준의 주거 공간을 향유하게 하는 것임

주택 건설 후원 프로젝트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 지난 수년간 주택건설비와 임대료가 치솟자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우선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프로그램부터 실시, 임대료 평준화에 성공함
- 잘츠부르크 주민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주거공간 내에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기존의 토지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절약하게 하기 위해 2015년 4월에 주택 건설 후원법을 도입함
- 가족 친화 주택, 스타트 청년 주택, 임대 주택과 저소득층, 사회 취약층 계층을 위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한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케 하며 인상 부분은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속해서 삶의 질을 높임
- 기후 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장려하고, 신축 주택이나 기존 주택의 보수작업에서 맞춤형과 수요에 맞게 상담, 추진, 동행하며 친환경 건축재료와 에너지 절약 방식을 채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출금액 상환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게 함
-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는 아니나 조건을 갖춘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잘츠부르크 도가 배정하는 한해 최소 141,856,000유로에서 잘츠부르크시나 플라흐가우, 풍가우, 텐넨가우 등 행정구역들이 할당분을 받아 시행함. 2019년, 조합 주택만 보더라도 총 6,700만유로를 풀어

1,700개 주택을 후원했는데 그중 자가 주택 596채에 13,963,800유로, 885 건물 지원에 51,887,800 유로, 294 주택 개량에 719,173유로를 지원했음 예)

구분	후원대상 주택	지원금(유로)		
		총액	비 상환금	개수
자가주택	506	13,963,800	13,963,800	27,596
객체(건물)	885	51,887,800	28,025,000	31,667
개량주택	294	719,173	719,173	2,446
총	1,685	66,570,773	42,707,973	25,346

출처: Abteilung, Planen, Bauen, Wohnen, Land Salzburg

도입 현황

- 기존 주택 외에도 연령층에 맞추어 대학생 기숙사와 양로원을 집중적으로 건설, 청년층과 노년층의 주택 수요를 해결함
- 중세도시 특유의 오랜 주택들을 개량하는 데 중점을 두며 주택정책 조치를 통해 중산층 수준을 공동지향하고 자가주택의 지원 역시 해마다 개선함
- 2016년에는 잘츠부르크 중앙역 인근의 대민서비스 센터에 주택 상담소를 설치, 시민들을 직접 상담하고 유선상으로도 무료 상담 서비스 수행. 2017년 1월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함
- 자가주택 건설이나 구매, 임대주택 건설이나 기숙사 형태의 주택 건립, 개량, 임대료 후원 등 여러 분야로 나뉘며,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후원인 객체 후원과 개인에 대한 주체 후원으로 나누고 상환 후원금과 비 상환 후원금(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나눔
- 개량주택 경우, 건축물 외부의 25%를 수리하면서 에너지 효율성을 참작할 경우 “큰 개량”이라 하며 나머지는 “기타 개량”으로 구분한다. 케이스 별로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복합적인 후원 조치가 포함됨
- 신청 자격은 자연인, 건축사나 시공사, 법인, 지자체, 지자체 연합, 잘츠부르크 도나 도 산하의 지자체 단독 소유의 법인이 가짐
- 적합한 토지 구매를 후원할 경우 아직 후원 객체가 아닌 구체적인 대지라야 하며 후원 주택(주택조합)형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포괄적으로 에너지 역학적인 개량을 앞둔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야 하고 구매 후원 필수조건인 자가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함. 후원 수혜자는 이러한 단지나 주택을 후원 계약이 체결되고 7년 이내에 목적과 실행 필수조건에 맞게 완공할 것, 오로지 자격을 갖춘 수혜자에게만 프리미엄 없이 팔아야 함. 또한 후원금을 상하수도나 도로 등, 지목확보 모델에 걸맞게 지자체의 인프라에 연결하며 후원을 통해 획득한 특혜나 장점을

- 축소나 여과 없이 고스란히 다음 소유주에게 양도할 것 등의 의무를 짊
- 시는 유리한 가격으로 후원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제공하고 잘츠부르크 공간계획법 2009에 규정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 지원함
 - 후원 객체가 되는 주택은 침실, 욕실, 부엌 등 기본 공간들을 구비하고 최소 30㎡ 크기라야 하며, 아파트 단지일 경우 개량 후원을 제외하고 최소 단지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 목적이야 하며, 단독 주택의 경우 최소 두 개의 빌라 주택이되 그 중 한군데는 주 소유주가 반드시 상시 거주하는 곳이라야 하고, 농가의 경우에는 거주 주택이 독립적으로 일 년 내내 농·임·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장 한가운데 위치하되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대상이라야 함
 - 양로원은 목적에 맞는 거실, 침실을 구비하는 것을 선두로 운영목적에 일치하는 공동 공간 등을 구비해야 하고 청년용 스타트 주택(Startwohnung)은 이용면적이 최대 55㎡로서 3년 기한으로 임대하고 임대계약 체결 시에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간 소득을 가진 자만 입주 가능함
 - 개량주택에서 “큰 개량”의 조건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지역난방(원거리 난방)을 연결하고 소음, 단열 처리, 결로방지나 분진 보호장비를 갖출 것이며 현대 사회의 최고 주거 수준에 일치해야 함. 장애인 주택은 일절 장애물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왕래 가능한 인프라이되 일반 주차장이나 기타 주민들이 사용하는 놀이터, 공원 등 시설이나 진입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주택 구매 시, 후원금은 기본금과 보너스로 구성된다. 제곱미터 당 면적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너스는 한 부모, 젊은 가족, 다자녀 가정에 제공되고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물 에너지 증명서 제출) 대지 절약, 장애 시설 설치, 노약자 돌봄 주택, 문화유적 보호와 관련될 때 부여. 임대주택의 후원 대상은 시영 주택, 시공사, 자연인, 단체 등이다. 친환경, 카세링 등 모빌리티 후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거점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경우이며 기숙사나 양로원, 집단 거주지 등은 지자체, 시공 건설사, 기업, 혹은 개별적인 세대주도 포함. 개량 주택은 건축 소유주나 건축사 등이 대상
 -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과 수입을 공개하고 부양가족 증명서(이혼 시 양육비 등), (대)학생 지원금 증명서, 실업자 보조금 등을 제반 서류 공개함
 - 후원금 상황 대상인 건물은 근저당 일 순위로 자리잡음. 지자체가 신청자일 경우, 혹은 상황 책임을 지며 보증인이 될 경우 등은 예외. 매각 금지 조항이 등기부에 오름
 - 상환 불필요, 즉 보너스에 해당하는 대상은 장인, 노인 돌봄 시설 조치, 건축 일부가 공간계획법 규정과 일치하거나 공공 관심사에 부합할 경우, 수리 후 주 거주지로 사용할 경우, 지난

5년간 다른 후원을 받은 기록이 없을 때임. 금액은 일괄 금액이며 최고한계액도 케이스마다 주어짐. 주택 임대료의 후원은 상환 불필요 대상이며 한 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가정이거나 소득세법 1988 제 35조에 의거, 직업 수행능력이 55% 이상 결여된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참작됨. 기본적으로 한달에 m^2 당 0.73유로를 후원함

- 에너지 절약주택 여부는 건물 상태, 냉방, 난방, 통풍, 창과 문 등의 단열 처리, 태양광 시설 여부, 건축 재료 등을 평가하는 심사 가이드라인의 정의, 단위 수치를 적용하며 현장에서는 내, 외부 무작위 추출 심사(예: 벽 단면 한 곳을 열어 플랜 대로 건축 재료를 사용했나 확인 여부)를 통해 제출한 서류와 플랜에 맞게 건물이 완성되었는지 확인함 예)

Unabhängiges Kontrollsystem Energieausweise

Neubauplanung
ZEUS-Nr.: 56319.19.4629.03



Energieausweis-Plausibilitätsprüfung

Kindergarten/Pflichtschule, Errichtung, Ganzes Gebäude: Nein

Es werden statistische Werte im Rahmen des unabhängigen Kontrollsystems überprüft, um in weiterer Folge eine Validitätsprüfung der Eingabe-Gebäudedaten durchführen zu können.

Diese Überprüfung hat keine Auswirkungen auf andere Prüfroutinen.

Gebäudegeometrie	Kennzahl/Einheit	Wertebereich	Ergebnis
A/V-Verhältnis	0,461 / m	> 0,2 und < 1,2	plausibel
V/BGF-Verhältnis	5.415,07 / 1.398,19m	> 2,8 und < 5,0	plausibel
Bauteile	Kennzahl/Einheit	Wertebereich	Ergebnis
U-Wert von Bauteilen	Min. 0,12W/m ² K Max. 0,28W/m ² K	>= 0,09 < 5,0	plausibel plausibel
Default-U-Werte der Bauteile		U-Werte lt. OIB-Leitfaden	—
Temperaturkorrekturfaktor	Min. 0,70 Max. 1,00	>= 0,5 <= 1,0	plausibel plausibel
Fenster und Türen	Kennzahl/Einheit	Wertebereich	Ergebnis
U-Werte für Fenster (gesamt)	Min. 0,83W/m ² K	>= 0,6	plausibel
g-Wert für Fenster	Max. 50,00 keine Angabe	>= 63% wenn U-Wert < 1,2 >= 53% wenn U-Wert < 0,6	plausibel —
Verhältnis Fenster zu Außenwand	29,83%	> 10% und < 30% der Außenwand	plausibel
Anzahl der Fenster	33	> 3	plausibel
Lüftung	Kennzahl/Einheit	Wertebereich	Ergebnis
Wirkungsgrad Erdwärmetauscher	keine Angabe	<= 0,2	—
Wärmerückgewinnung	keine Angabe	<= 0,85	—
Luftwechselrate n50 (Blower Door)	keine Angabe	>= 0,4	—

출처: Unabhängiges Kontrollsystem Energieausweise, Land Salzburg

시사점 및 문제점

- 케이스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후원 금액과 상환 시기 등은 실제 소득이나 향후 상황에 따라 불확실하거나 유동적일 수 있고 모니터링, 감독 실시와 오용 사례의 적발 내지 계약 위배 시에 상환 등, 행정 소모도 있으나 전 시민에게 중산층 수준의 주택을 제공,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함

Tel.: +43 662 8042-0

Land Salzburg

AmtderSalzburgerLandesregierung

Postfach527

5010Salzburg

post@salzburg.at

출처: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LrSbg&Gesetzesnummer=20000941>

https://www.salzburg.gv.at/bauenwohnen_/Seiten/wbf-neu-infomaterial.aspx

<http://www.salzburg.gv.at>

https://www.salzburg.gv.at/bauenwohnen_/Documents/WBF_Miete_2019_1_19.pdf



김정원 통신원

(오스트리아 법정통역 번역공증인)

kimvienna@hotmail.com